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31 선고 2021나2372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다27405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31 선고 2021나2372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22 선고 2020가소140244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박민정, 송호섭, 임남구

피고,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연

담당변호사 윤길용

변론 종결 2022. 6. 8.

판결 선고 2022. 8. 31.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22. 선고 2020가소1402442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원 및 그 중 7,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2. 20.부터, 5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4. 9.부터 각 2022. 8. 31.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7. 11. 5. 원고와 사이에 계약자 및 피보험자 피고, 보험가입금액 10,000,000원, 계약기간 1997. 11. 5.부터 2017. 11. 5.까지로 정하여 'C'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중 휴일일반재해장해급여금 관련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4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참조)을 지급합니다.

1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장애분류표 중 제3급

내지 제6급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 휴일일반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

(별표1)

(17) 휴일일반재해장해급여금(약관 제14조 제1항 제17호)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장애분류표 중 제3급 내지 제6급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금액	(기준 : 계약보험가입금액)

(별표5) 장애등급분류표

등급	신체장애
제5급	14. 척추에 운동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장애등급분류해설)

13. "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애"

라. "척추의 운동장애"

목뼈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굽히기, 좌우굽히기 및 좌우회전운동 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나. 피고는 2016. 8. 14.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자택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허리를 다쳐 E병원과 F의원에서 요추압박골절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17. 2. 14.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정형외과의원에서 '요추 제3번 압박골절로 전만 10도 잔존한 상태이며, 동통, 압통, 운동제한이 잔존하고 있어 향후 치료를 시행하여도 후유증은 영구적으로 남을 것으로 사료됨. 운동범위(건측/환측): 전굴(65/20), 후굴(25/10), 좌굴(25/5), 우굴(25/5), 좌회전(30/10), 우회전(30/10)'이라고 기재된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은 다음, 2017.

2. 15.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었음을 청구사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라. 원고는 2017. 3. 6. 피고에게 휴일일반재해장해급여금으로 장해 5급에 대한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7,500,000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장해등급분류표상 5급 14항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지 않아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받았거나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보험금을 편취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보험금 상당액 7,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함에 따라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나중에 보험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는 그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이때 보험자가 피보험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근거하여 보험료 지급에 관한 심사를 하는 단계에서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밝히지 못하고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7626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보험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가) 피고는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과 관련하여 2019. 9. 1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위반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형제45158호).

나) 피고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의 제3요추 압박 골절은 압박율 18%, 전만각

15도로서 경도에 해당하고, 흉요추의 운동 범위는 굴곡 70도(정상 90도), 신전 20도(정상 30도), 우굴곡 30도(정상 30도), 좌굴곡 30도(정상 30도), 우회전 30도(정상 30도), 좌회전 30도(정상 30도)이며, 흉요추의 전체 운동 범위는 210도로서 정상적인 운동 범위 240도에 대하여 12.5%의 감소를 보이고 있어, 그 장애의 정도가 장애등급분류표상 5급 1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뼈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굽히기, 좌우굽히기 및 좌우회전운동 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운동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감정의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피고의 상태에 대한 평가는 동일하나, 제1심에서 피고가 장애등급분류표상 5급 14항에 해당한다고 감정한 것은 오류였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500,000원 및 그 중 7,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正本 송달일 다음날인 2020. 2. 20.부터, 5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20. 4. 9.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8.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부당이득반환채무는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으므로, 위와 같이 이 사건 지급명령正本 송달일 다음날 및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체책임만 인정한다).

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한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창열

판사김수경

판사김우현

1) 앞에서 선택적 청구 중 하나의 청구를 인정한 이상 나머지 선택적 청구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지연손해금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나아가 살펴보기로 한다.